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여신한도거래 약정서

(한도거래용, 기업용)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

20      년      월      일

인감대조

본 인

인

주 소

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회전여신(당좌대출 및 통장대출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한도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당좌대출 및 통장대출의 경우 관련 수신거래 약관을 포함합니다)” 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 제 1 절 일 반 약 정

#### 제1조 여신한도

① 여신과목, 약정금액, 이자 및 지연배상금률, 기타 거래조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신청여신은 각 여신과목 한도내의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여신종별한도 및 총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기로 합니다. 약정통화와 실제 거래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대고객진신한도율 등 은행이 정하는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여신한도를 계산합니다.

여신종별한도		여신과목별한도		이자율(보증료) 등 (※ 변동금리 적용시 아래 금리약정사항참조)	
구분	금액	여신과목	금액		
			금      원	<input type="checkbox"/>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변동	기준금리 (      ) +      %
			금      원	<input type="checkbox"/>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변동	기준금리 (      ) +      %
			금      원	<input type="checkbox"/>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변동	기준금리 (      ) +      %
			금      원	<input type="checkbox"/>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변동	기준금리 (      ) +      %
			금      원	<input type="checkbox"/>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변동	기준금리 (      ) +      %
			금      원	<input type="checkbox"/>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변동	기준금리 (      ) +      %
			금      원	<input type="checkbox"/>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변동	기준금리 (      ) +      %
			금      원	<input type="checkbox"/>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변동	기준금리 (      ) +      %
총 한 도		금	원정		

※ 변동금리 적용여신인 경우 제4조에 근거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자(보증료)율 란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한국씨티은행

CR-A-319 (2026.03.13) 심의필 2603-02-006

시장금리부여신 :

- CD수익률 + \_\_\_\_\_ % (금리변동주기 : 매 \_\_\_\_\_ 개월)
- COFIX금리(□단기/□신규/□잔액□신잔액) + \_\_\_\_\_ % (금리변동주기: 매 \_\_\_\_\_ 개월)
- 금융채금리(□3개월물/□6개월물/□1년물) + \_\_\_\_\_ % (금리변동주기: 매 \_\_\_\_\_ 개월)
- USD SOFR (□1개월물/□3개월물/□6개월물)+ \_\_\_\_\_ % (금리변동주기: 매 \_\_\_\_\_ 개월)
- JPY TONA (□1개월물/□3개월물/□6개월물) + \_\_\_\_\_ % (금리변동주기: 매 \_\_\_\_\_ 개월)
- EURIBOR (□1개월물/□3개월물/□6개월물/□12개월물) + \_\_\_\_\_ % (금리변동주기: 매 \_\_\_\_\_ 개월)
- GBP SONIA + \_\_\_\_\_ % (금리변동주기: 매 \_\_\_\_\_ 개월)
- CHF SARON + \_\_\_\_\_ % (금리변동주기: 매 \_\_\_\_\_ 개월)

장외파생상품 연계 외화여신 (아래 금리를 총칭하여 “1일물 무위험지표금리(복리)”라 합니다) :

- USD 1일물 SOFR (복리) + \_\_\_\_\_ %
- JPY 1일물 TONA (복리) + \_\_\_\_\_ %
- EUR 1일물 EuroSTR (복리) + \_\_\_\_\_ %
- GBP 1일물 SONIA (복리) + \_\_\_\_\_ %
- CHF 1일물 SARON (복리) + \_\_\_\_\_ %

수신(수탁)금리연동여신 : 수신(수탁)금리 + \_\_\_\_\_ %

고시금리부여신 : 고시금리 + \_\_\_\_\_ %

정책금융공사간접대출 :

정책금융공사간접대출금리 + \_\_\_\_\_ %

외부차입금리 + \_\_\_\_\_ %

(정책자금명: \_\_\_\_\_, 현재 대출금리: \_\_\_\_\_ % )

② 본인의 필요로 은행이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여신을 취급한 경우(신규여신 과목추가를 포함합니다)에는 그에 따른 초과취급분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제2조 거래기간**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까지로 합니다.

**제3조 이자·지연배상금**

- ① 여신의 이자율은 제1조 제1항과 같이 하고 은행이 정한 계산방법 및 지급시기(당좌대출 및 통장대출거래인 경우 제19조에서 정한 매월 결산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기간 만료일 도래전이라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당좌대출 및 통장대출의 경우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⑤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화여신 및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에 따릅니다.
- ⑥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⑦ 지연배상금률은 은행에서 정하는 율 [여신금리 + 연체가산금리]로 합니다.
  1. 여신금리는 해당여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여신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가산금리는 연 3%를 적용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금리는 연 14.9%로 합니다. 단, 약정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 여신이자율의 변동**

① 「시장금리부여신」이라함은 시장기준금리 또는 고시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동되는 여신을 말하며, 시장기준금리란 원화여신의 경우 여신실행일 및 금리변경 적용일의 CD수익률, 단기COFIX금리, 신규COFIX금리, 잔액COFIX금리, 신잔액COFIX금리, 금융채3개월물,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리 중 고객 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 외화여신의 경우에는 USD SOFR, JPY TONA, EURIBOR, GBP SONIA, CHF SARON 중 통화에 맞추어 고객이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만일 이 약정서에 따른 외화여신과 연계하여 은행과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이 제1조에서 선택한 1일물 무위험지표금리(복리)가 시장 기준금리로 적용됩니다. 각각의 시장금리의 변동은 아래의 변동주기와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1. **CD수익률**이 사용되는 경우 아래에 정한 바에 따라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가.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CD수익률은 여신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에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을 적용하고, 이자율은 3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나.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그 대체금리는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로 합니다.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는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하여 공시하는 금리로서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므로, CD수익률의 대체금리로 선정하기로 합니다.
  - 다. 은행은 CD수익률의 산출이 중단됨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공시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하기로 합니다. 또한, 은행은 홈페이지에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금리 및 선정근거, 적용 시기 등 전환절차와 일정을 안내하기로 합니다.
2. **USD SOFR, JPY TONA, EURIBOR, GBP SONIA, CHF SARON 및 1일물 무위험지표금리(복리)**는 제7항 내지 제11항에서 각 통화별로 정한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3. **단기COFIX 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주 3영업일에 고시하며, 매 3개월이 되는 날의 직전 고시일에 고시된 이자율로 3개월마다 변경됩니다.
4. **신규COFIX, 잔액COFIX 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15일에 고시하는(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잔액기준 COFIX금리, 신잔액COFIX금리로, 신규취급액기준의 경우 매6개월, 잔액기준 또는 신잔액기준의 경우 매1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고시일에 고시된 이자율로 변경됩니다.
5. **금융채3개월물 (6개월물, 1년물) 기준금리**는 여신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3개월(매6개월, 매1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민평평균 '3개월물, 6개월물, 1년물 금융채 I (은행채) AAA 증가'**를 말하고, 이자율은 3개월 (6개월, 1년)마다 변동됩니다.
- ② **「수신(수탁)금리 연동여신」**은 고객의 예금·적금·부금·신탁 등 수신상품을 담보로 하는 여신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수신(신탁)상품의 수신금리가 변동되는 날에 여신이자율이 변동됩니다.
- ③ **「조정금리 여신」**의 경우에는 국가경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사정변경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여신만료일까지 금리를 변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 ④ **「고시금리부 여신」**이란 은행이 주기적(1주일 또는 2주일 등)으로 게시하는 고시금리가 변동함에 따라 실행건별로는 적용금리가 변동하나 실행 건에 대해서는 건별 만기까지 실행 당시의 고시금리가 적용되어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여신을 말합니다. 고시금리란 한국은행의 콜금리 또는 기간별(3개월, 6개월, 1년 등)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민평평균 금융채 I (은행채) AAA등급 증가**에 은행의 적정비용과 마진, 업무원가 등을 가산하여 산출하는 금리이며, 한국은행 차입성대출의 경우 은행의 한국은행 차입비용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 ⑤ **「정책금융공사간접대출」**이란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취급하는 대출입니다. 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 금리는 CD 3개월평균수익률(운전자금) 및 정금채 1년평균수익률(시설자금)에 조달비용을 감안하여 정책금융공사가 3,6,9,12월 매5일에 공사홈페이지 또는 중개금융기관에게 통지하는 금리로서 이자율은 운전자금의 경우 3개월, 시설자금의 경우 1년마다 변동됩니다.
- ⑥ **「외부차입금리」**란 여신실행일에 자금대여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의미하며, 자금대여기관의 고시금리 변동에 따라 여신이자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USD 외화여신의 경우, 아래에 정한 바에 따라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1. USD 외화여신의 경우, 아래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USD 장외파생상품 연계 여신을 사용할 경우, "1일물 SOFR (복리)"가 기준 금리로 적용됩니다.
    - 가. 기간물 SOFR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 나. 기간물 SOFR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1일물 SOFR (단리)
    - 다. 1일물 SOFR (단리)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계산되지 않는 경우, 은행과 고객이 시장 금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리
  2. 본 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집니다.
    - 가. "SOFR"란 뉴욕연방준비은행(또는 SOFR에 대한 승계 산출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newyorkfed.org>) 또는 그 밖에 SOFR 산출기관이 SOFR의 출처로 지정한 곳에 고시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 (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를 의미합니다.
    - 나. "기간물 SOFR"란 어느 해당 기간에 대하여 CME 그룹이 산출하여 고시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 (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SOFR에 기초하는 선도 기간물 금리를 의미합니다.
    - 다. "1일물 SOFR (단리)"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산출된 1일물 SOFR 금리를 단순 평균하여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 라. "1일물 SOFR (복리)"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산출된 1일물 SOFR 금리를 복리로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 ⑧ JPY 외화여신의 경우, 아래에 정한 바에 따라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1. JPY 외화여신의 경우, 아래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JPY 장외파생상품 연계 여신을 사용할 경우, "1일물 TONA (복리)"가 기준 금리로 적용됩니다.
    - 가. 기간물 TONA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 나. 기간물 TONA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1일물 TONA (단리)
    - 다. 1일물 TONA (단리)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계산되지 않는 경우, 은행과 고객이 시장 금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리

2. 본 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집니다.
  - 가. “TONA”란 일본은행(또는 TONA에 대한 승계 산출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boj.or.jp> 또는 그 밖에 TONA 산출기관이 TONA의 출처로 지정한 곳)에 고시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Tokyo overnight average rate를 의미합니다.
  - 나. “기간물 TONA”란 해당 기간에 관하여 일본은행 (또는 TONA에 대한 승계산출기관)이 관리하고, QUICK Benchmarks Inc. 또는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다른 정보기관(Refinitiv, Bloomberg 등)이 고시하는 TONA에 기초하는 선도 기간물 금리를 의미합니다.
  - 다. “1일물 TONA (단리)”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산출된 1일물 TONA 금리를 단순 평균하여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 라. “1일물 TONA (복리)”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산출된 1일물 TONA 금리를 복리로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⑨ EUR 외화여신의 경우, 아래에 정한 바에 따라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1. EUR 외화여신의 경우, 아래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EUR 장외파생상품 연계 여신을 사용할 경우, “1일물 EuroSTR (복리)”가 기준 금리로 적용됩니다.
  - 가. EURIBOR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
  - 나. EURIBOR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계산되지 않는 경우, 은행과 고객이 시장 금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리
2. 본 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집니다.

- 가. “EURIBOR”란 European Money Markets Institute(또는 그로부터 동 금리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자)가 관리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euro interbank offered rate를 의미합니다.
- 나. “EuroSTR”이란 유럽중앙은행(또는 그로부터 금리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자)에서 관리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euro short-term rate을 의미합니다.
- 다. “1일물 EuroSTR (복리)”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산출된 1일물 EuroSTR 금리를 복리로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⑩ GBP 외화여신의 경우, 아래에 정한 바에 따라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1. GBP 외화여신의 경우, 아래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GBP 장외파생상품 연계 여신을 사용할 경우, “1일물 SONIA 복리)”가 기준 금리로 적용됩니다.
  - 가. 1일물 SONIA (단리)
  - 나. 1일물 SONIA (단리)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계산되지 않는 경우, 은행과 고객이 시장 금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리
2. 본 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집니다.

- 가. “SONIA”란 영란은행(또는 SONIA에 대한 승계 산출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bankofengland.co.uk> 또는 그 밖에 SONIA 산출기관이 SONIA의 출처로 지정한 곳)에 고시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를 의미합니다.
- 나. “1일물 SONIA (단리)”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산출된 1일물 SONIA 금리를 단순 평균하여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 다. “1일물 SONIA (복리)”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산출된 1일물 SONIA 금리를 복리로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⑪ CHF 외화여신의 경우, 아래에 정한 바에 따라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1. CHF 외화여신의 경우, 아래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CHF 장외파생상품 연계 여신을 사용할 경우, “1일물 SARON (복리)”가 기준 금리로 적용됩니다.
  - 가. 1일물 SARON (단리)
  - 나. 1일물 SARON (단리)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계산되지 않는 경우, 은행과 고객이 시장 금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리
2. 본 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집니다.
  - 가. “SARON”이란 SIX Swiss Exchange AG(또는 SARON에 대한 승계 산출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six-group.com> 또는 그 밖에 SARON의 산출기관이 SARON의 출처로 지정한 곳)에 고시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Swiss Average Rate Overnight를 의미합니다.
  - 나. “1일물 SARON (단리)”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산출된 1일물 SARON 금리를 단순 평균하여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 다. “1일물 SARON (복리)”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산출된 1일물 SARON 금리를 복리로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5조 중도상환수수료**

- ①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여신을 당초 약정한 만기일전에 상환(일부상환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계산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text{중도상환금액} \times \text{중도상환수수료율}(\%) \times \text{잔여일수} / 365(\text{윤년은 } 366)$   
 (잔여일수는 상환일부터 차기 이자변동일까지를 한편넣기로 일수 계산한다.)



통지에 의하여 관련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상계 시 상계전일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상계 후에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12조 담보권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칩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종 별	증서기·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금 액 (계약액)	20 . . .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수익자				

※ 주의 : 채무자 본인명의 담보인 경우에만 본란을 사용합니다.

- ⑤ 본인이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담보 이외에 다른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은행은 담보목적물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담보목적물에 접근 또는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채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부 채 비 율	%	%	%	%	%
자 기 자 본 비 율	%	%	%	%	%
( )비율	%	%	%	%	%
( )비율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본인은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은행이 청구하는 경우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 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제14조 자료의 제출 등

① 본인은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8조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 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 제15조 허위자료 제출 등의 경우 조치

① 여신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등이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작성 명의상의 허위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3항 제5호 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 외에 신규여신의 취급중단, 기타법적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과 체결한 약정, 기타 특약사항 또는 자구계획서 등 별도로 제출한 서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은 신규여신 취급중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4항 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진술 및 보장, 기한전 변제의무 등

① 본인은 이 약정체결일 및 각 인출일에 은행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1. 본인은 그 설립준거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 본인은, (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나) 자기명의로 자산을 소유하고, (다) 이 약정에 따른 채무 기타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라) 이 약정 및 이 약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며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본인은 이 약정 및 이 약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고, 그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업 내부의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4. 본인은 이 약정의 체결, 교부 및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유효,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인허가상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이 약정에 따른 본인의 의무는 유효,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으며, 이 약정의 제조건 및 법률에 따라서 유효,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에 의한 이 약정의 체결, 교부 및 이행과 이 약정에 따른 본인의 지급은 (가) 본인에게 적용되는 어떠한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고, (나) 본인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 본인이 당사자이거나 본인의 자산에 효력을 미치는 어떠한 계약상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당해 계약상 채무불이행사유를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7. 본인의 재정상황 또는 본인의 이 약정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본인이 아는 한 그러한 조사,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제기될 우려도 없습니다.
8. 본인은 이 약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은행이 요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은행에 제공하였어야 할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본인이 아는 한 그러한 정보는 정확합니다.
9. 본인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각종 지급의무를 이행할 자력이 있습니다.
10. 본인은 각 여신실행일에 본인 및 본인의 자회사 전체에 대하여 영업, 재무상황 및 운영에 중대하게 불리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②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은행의 여신실행일에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해당 여신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전의 변제 사유
  -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기재된 사유
  - 3.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각 사유
- ③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4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1. 본인이 이 약정상 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공한 보증, 담보 계약 및 신용보강약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 2. 본인이 법원의 최종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있는 후에 그 판결 또는 명령에 따른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본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법하게 위 판결 또는 명령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본인이 이 약정상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4. 본인이 이 약정에 따라 제공한 진술 및 보증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 5. 본인이 이 약정 외에 다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④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정에 따른 여신의 실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해당 여신금액의 사용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영업상 이익의 상실 등 본인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 동의합니다.
- ⑤ 본인이 이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은행이 손해, 손실, 비용 또는 채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은행에 배상하기로 합니다.

#### 제17조 외화여신에 대한 특약사항

- ①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여신이 외화여신인 경우 아래 각 항의 특약사항이 적용됨에 동의합니다.
- ② 본인은 본인에 대하여 진행되는 소송, 압류, 집행, 기타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주권면제의 주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③ 본인이 이 약정에 따라 은행에 상환 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관련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다만, 은행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는 제외함), 본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며, 은행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 약정에 따른 원리금 지급이 해당 외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은행은 상환 당일의 대고객진환매도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고시환율을 적용하여 해당 외화로 환전하여 그 변제에 충당하며, 부족분이 있는 경우 본인이 은행에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은행이 본인에게 그 잔여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18조 자금용도의 유용시 제재조치

- ① 대출금의 용도의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 ② 자금용도의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한도거래여신은 인출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차주가 법인(신설법인 제외)인 한도거래여신의 경우 일상적인 상거래 대금 결제 목적 사용여부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 ③ 용도의 유용 최초 적발시 자금용도의 유용 적발일로부터 1년까지, 추가 적발시 자금용도의 유용 적발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됩니다.

## 제 2 절 (일중)당좌대출 및 통장대출거래 특별약정

### 제19 대출금지방법 등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통장대출 등록계좌 및 당좌예금(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은행은 이자의 원가 또는 어음·수표대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제1조의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초과된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 ④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빠져나 제1조의 한도금액 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
- ⑤ 대출금은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⑥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20조 이자의 지급시기

- ① 통장대출은 다음 각호의 1종 채무자가 선택하여 약정한 시기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채무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네 번째 주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매월 네 번째 주 첫 번째 영업일
  - 매월 다섯 번째 주 첫 번째 영업일
- ② 당좌대출은 변제기 또는 이자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다섯 번째 주 첫 번째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일중당좌대출에 관하여는 제24조 제3항에 따릅니다.
- ③ 제1항, 제2항에서 약정한 해당 월 다섯 번째 영업일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월 첫 번째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 제21조 이자원가의 제한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여신한도거래약정서(기업용) 제3조 및 제18조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자원가는 제1조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다음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22조 미원가 금액의 입금 및 변제충당

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계좌에 부족금액을 곧 입금하기로 하며, 모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 제23조 당좌대출에 관한 특약

- ① 당좌대출의 1회의 대출기간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 ②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 ③ 제8조에 의한 감액·정지로 인하여 그 전에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더라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 ④ 은행은 어음·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여신기간 만료일전에 발행한 어음·수표를 여신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 제24조 일중당좌대출에 관한 특약

- ① 제7조 소정의 “상환방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중당좌대출은 당일의 귀행 영업시간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 ② 제3조 소정의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중당좌대출에 대하여는 매일의 대출 최고잔액을 기준으로 연 %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당일 영업시간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는 일중당좌대출에 대하여는 익일부터 귀행의 은행계정 지연배상금율(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③ 제3조 소정의 “이자지급방법 및 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월 발생한 일중당좌대출 이자는 다음달 첫 영업일에 후급한다.

### 제 3 절 기타 특약사항

본 인: (인)

--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

인

(인)

(수입인지 첨부란)

--